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5년 7-8월 | 2025/07-08 호

국제사무국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 변경 - 재공지

2025년 7월 1일부로, 은행송금을 통해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WIPO의 은행계좌의 은행명 및 계좌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앞으로 WIPO와의 모든 거래에 대해 새로운 IBAN, SWIFT 코드 및 은행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은행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프랑(CHF)

계좌명:	WIPO
주소:	UBS SWITZERLAND AG, ZURICH, SWITZERLAND
IBAN:	CH77 0024 0240 FP10 1035 6
Swift:	UBSWCHZH80A
계좌명:	WIPO / OMPI
은행: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	POFICHBE

미국 달러(USD)

계좌명:	WIPO
은행:	UBS SWITZERLAND AG, ZURICH, SWITZERLAND
IBAN:	CH24 0024 0240 FP10 2324 1
Swift:	UBSWCHZH80A

유로(EUR)

계좌명:	WIPO
은행:	UBS SWITZERLAND AG, ZURICH, SWITZERLAND
IBAN:	CH67 0024 0240 FP10 2324 3
Swift:	UBSWCHZH80A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추가 정보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ko/web/paying-for-ip-services/pct-fees>

기존 계좌로 납부하셔도 과도기 동안에는 납부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과 각 방법별로 허용되는 통화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WIPO 로의 PCT 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ko/web/pct-system/fees/index>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finance>

PCT 시행세칙 개정

개정된 PCT 시행세칙이 202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외에 일본어와 러시아어로도 PDF 형식으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texts/index>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텍스트는 아래에서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texts/index>

<https://www.wipo.int/fr/web/pct-system/texts/index>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식재산기관,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수리 및 처리 개시 예정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식재산기관(**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Bosnia and Herzegovina**)은 2025년 10월 1일부로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을 수리 및 처리할 준비가 된다고 PCT 규칙 89의 2.1(d) 및 89의 2.2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식재산기관은 ePCT를 사용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국제출원을 수리합니다. 전자출원 수수료 감면액은 수수료규정(**Schedule of Fees**) 4 번 항목(item 4)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전자출원 수수료 감면액은 수수료표(**Fee Table**) I(a)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에 관한 상기 기관의 요건 및 방식이 담긴 통지사항이 아래와 같이 2025년 7월 17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official-notices/index>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BA) 업데이트)

대한민국 특허청(KIPO) –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요건 및 방법

이미 ePCT 를 통한 국제출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허청(KIPO)은, 국제출원 및 관련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과 관련한 동 청의 요건과 방식이 담긴 통지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2025년 7월 17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official-notices/index>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KR) 업데이트)

PCT 규칙 89의 2.1(d)의 2에 따른 관청의 통지

지난 2024년 7월 PCT 총회(PCT Assembly)에서 PCT 규칙 89의 2.1의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무국 이외의 관청이, 국제출원이나 후속제출서류를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문서를 2개월 내에 전자적 형태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발효된 새로운 규칙 89의 2.1(d)의 2)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사무국 이외의 (d)항에 따라 통지한 국내관청 또는 정부 간 기구는 국제출원이 전자적 형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만을 수리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본 항에 따른 통지를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BR 브라질

PCT 규칙 89의 2.1(d)의 2)에 따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은 2025년 9월 3일부터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 및 관련 후속제출서류만을 수리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BR) 업데이트)

IR 이란

PCT 규칙 89의 2.1(d)의 2)에 따라,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센터(이란회교공화국)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 및 관련 후속제출서류만을 수리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R) 업데이트)

NZ 뉴질랜드

PCT 규칙 89의 2.1(d)의 2)에 따라,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은 2025년 9월 24일부터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 및 관련 후속제출서류만을 수리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NZ) 업데이트)

SA 사우디아라비아

PCT 규칙 89의 2.1(d)의 2에 따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은 2025년 9월 24일부터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 및 관련 후속제출서류만을 수리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SA) 업데이트)

TR 터키

PCT 규칙 89의 2.1(d)의 2에 따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은 2025년 9월 24일부터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 및 관련 후속제출서류만을 수리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TR) 업데이트)

PCT 정보 업데이트

AT 오스트리아 (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 관청으로서의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납부되는 아래 수수료들의 금액이 2025년 7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

서류 수수료(Schriftengebühr): EUR 74

실용신안:

서류 수수료(Schriftengebühr): EUR 74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AT) 업데이트)

SG 싱가포르 (국제출원 사본 제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국내단계 진입 시 국제출원 사본 제출 관련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만 국제출원 사본을 제공하면 됩니다. 이는 PCT 조약 제 23 조(2) 또는 제 40 조(2)에 따라 출원인이 국내단계 조기진입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SG)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여러 관청)

2025년 9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 USD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EUR
유럽 특허청(EPO)	CNY
인도 특허청	CHF, EUR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CHF, EUR, JPY, KRW, USD
이스라엘 특허청	USD
대한민국 특허청	USD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1일부터,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SGD로 납부되는 아래 수수료들의 금액이 변경됩니다.

조사료:	SGD	2,350
추가조사료:	SGD	2,350
보충적 조사료:	SGD	2,350

변경 후 금액은 수수료표(Fee Table)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BR, CA, CN, EA, EP, IL, IN, KR 및 SG) 업데이트)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2025년 9월 1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SGD로 납부되는 아래 수수료들의 금액이 변경됩니다.

예비심사료:	SGD	900
추가 예비심사료:	SGD	900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 (BR 및 SG)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2025년 9월 1일부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서 수행하는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SGD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SGD 2,350입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CHF로 납부되는 보충적 조사료의 등가액도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CHF 1,458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SG) 업데이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회의

국제기관회의(MIA)

제 32 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25년 10월 29부터 31일까지 가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를 위한 작업문서들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8990

미국에서 PCT 및 ePCT 순회세미나 개최

WIP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함께 PCT와 ePCT에 대한 1일 세미나 4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PCT 관련 경험이 있는 특허 대리인과 변리사, 외국출원 전문가,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세미나에서는 최신 PCT 동향을 짚어보고 WIPO 및 미국 특허상표청 전문가들의 실무 모범 사례와 팁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세미나는 무료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며, 현장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대화식 세션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9월 12일(금) USPTO Western Regional Outreach Office, San Jose, California
- 2025년 9월 16일(화) USPTO Rocky Mountain Regional Outreach Office, Denver, Colorado
- 2025년 10월 24일(금) USPTO Southwest Regional Outreach Office, Dallas, Texas
- 2025년 10월 28일(화) USPTO Midwest Elijah J. McCoy Regional Outreach Office, Detroit, Michigan

회차별 프로그램 및 워크샵은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web/pct-system/w/news/2025/patent-cooperation-treaty-pct-and-epct-seminar>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2025년 10월 13-14일 양일간 제네바에 소재한 WIP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년과 같이 WIPO 특허 및 기술부(Patents and Technology Sector) 소속 경험 많은 직원들과, 그 외 미국 특허상표청의 연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세미나는 PCT 제도에 이미 친숙한 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 직원 및 기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날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둘째 날은 법률 및 처리상 이슈들에 대한 체험 워크숍, ePCT 클리닉, 그리고 PCT 운영팀(PCT Operations Teams) 방문 프로그램이 현장 참석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및 추가정보를 위한 링크는 조만간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용한 도움말

대리인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해 출원인을 대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기

Q: 제가 미국 대리인으로서, 캐나다 국민이자 거주자인 의뢰인(공동출원인 없음)을 위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ePCT로 PCT 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A: PCT 규칙 83.1의 2(a)는 PCT 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동 규정은 출원인(또는 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적어도 한 명의 출원인)이 거주자 또는 국민인 체약국의 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합니다. 누가 특정 국내 또는 지역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느냐는 PCT 규칙 90.1에 따라 각 관청이 결정합니다. 귀하의 의뢰인이 캐나다 국민이자 거주자이므로 귀하는 캐나다 특허청에 대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ePCT로 PCT 출원을 하는 경우 ePCT는, 대리인에게 해당 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ePCT 사용자로 하여금 “대리인은 수리관청에 대하여 업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The Agent is entitled to practice before the following Receiving Office)라고 적힌 박스에 체크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리인이 수리관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주로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출원의 방식상 흡결 심사 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보통 국내 등록부에서 특정 대리인의 등록을 확인하거나, 특히 대리인 협회가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럽 특허청 등록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지역관청에 대해 업무를 할 대리인의 권리에 대해 의심을 품은 예외적인 경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대리인이 등록되었다고/업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국내/지역관청의 도움을 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PCT 규칙 83.1의 2(a)에 따라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음을 (자체적 검토 또는 국내관청이나 제 3자의 이의제기(objection)에 따라) 확인하면 직권으로 대리인 상태를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로 정정합니다.

대리인은, 수리관청에서 대리인 표시가 부정확하다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이 해당 표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에 해당 표시가 정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게 대리인으로서 출원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으면 본인을 “통신용 주소”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거나, 의뢰인에게 캐나다 특허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셔야 합니다. “통신용 주소” 지정은 귀하가 PCT를 준수하면서 계속해서 통신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아래 호들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PCT 뉴스레터 2024/02 호 (<https://www.wipo.int/documents/d/pct-system/docs-ko-newslett-2024-newslett-2024.pdf>)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자격(국제출원이 다른 국가의 출원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PCT 뉴스레터 2020/06 호 (https://www.wipo.int/documents/d/pct-system/docs-ko-newslett-2020-newslett_2020.pdf)
- ePCT에서 국제출원 제출 및 관리하기 - 특히 서명권자가 아닌 자가:
PCT 뉴스레터 2017/05 호 (https://www.wipo.int/web/pct-system/w/newsletters-practical-advice/pa_052017)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AL 알바니아 (전화번호, 이메일 및 인터넷 주소, 팩스 사용 중단)

AP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 (수수료, 팩스 사용 중단)

BR 브라질 (수수료)

HU 헝가리 (수수료)

PL 폴란드 (국제공개 후 잠정적 권리 보호)

SE 스웨덴 (국제형 조사 관련 규정, 국제공개 후 잠정적 권리 보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일본어 자료

러시아어 자료